

거 소 투 표 신 고 서

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·시·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.

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(년 월 일) 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 소 (주민등록지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세 대 주 성 명	
거 소 (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
성 명	생년월일	성별	남·여

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○표를 하고, 1·2·3·6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거소투표 신고사유	확 인 자	확 인 란	확 인 자 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
1.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	부대장· 경찰관서장	· 장의 직명(성명) _____ ㉠	
2. 병원·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·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·수감된 사람	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교도소·구치소의 장	· 장의 직명(성명) _____ ㉠	
3.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	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·리·반의 장	· 장의 직명(성명) _____ ㉠	
4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5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			
6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·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	기관·시설의 장 (자가치료·격리의 경우 해당 없음)	· 장의 직명(성명) _____ ㉠ (자가치료·격리 의 경우 해당 없음)	

본인은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_____ ㉠

구·시·군의 장 귀하

주: 1.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.

2. "거소"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칭을, ② 승선자는 합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, ③ 병원·요양소·기관·시설 등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·교도소·구치소에 수용·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·시설명칭을,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 등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(세입자는 "○○○댁"까지) 자세히 적어야 하며, "전화번호"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3.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·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(職印)을 찍거나,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·리·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

4.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.

5.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습니다.

6.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
거소·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

접수번호	성명	주소	거소·선상투표신고 사유 (비고)
접수일자	생년월일·성별	거소 (우편번호)·(전화번호)	

주: 1. 이 접수부에는 거소·선상투표신고서의 해당 신고사항을 기재한다.

2. 신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하여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비고란에 적는다.
3. "거소·선상투표신고사유"란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유란에 표시된 해당 번호 또는 내용을 적되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(라)에 따라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그 거소가 병원·요양소인 경우에는 "2"로, 그 밖의 경우에는 "3"으로 적는다.

[별지 제3호서식의다)] (규칙 제11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1. 10. 22.>

선 상 투 표 신 고 서

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·시·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.
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이 신고서를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·시·군의 팩시밀리
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.

주 소 (주민등록지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		세 대 주 성 명	
성 명		생년월일 (성 별)	(남 · 여)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
승선(예정)선박 명칭 (영문명)		팩시밀리 번호(1개 이상 기재)			선박의 위성통신 전화번호
		①			
		②			
		③			

선상투표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“√” 표시를 하여야 하며, 해당 확인자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합니다.

선상투표 신고사유	확 인 란
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[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(裸傭船) 포함]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	·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·성명 ㉑
☐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[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(裸傭船) 포함]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	·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·성명 ㉑
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[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(裸傭船) 포함]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	·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·성명 ㉑
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	· 선박소유자, 선박 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·성명 ㉑

본인은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상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㉑

구·시·군의 장 귀하

- 주: 1.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.
2. "선박의 명칭"란에는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을 적습니다.
3. "팩시밀리 번호"란에는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수 있는 팩시밀리 번호를 적습니다. 또한,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시·도위원회로 선상투표지를 전송하는 때에도 같은 번호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은 「공직선거법」 제179조제3항에 따라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.
4. "확인란"에는 선박 소유자,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·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.
5.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.
6.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선상투표신고인에게는 선상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습니다.
7. 거짓으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
거 소 투 표 신 고 서

귀하께서는 통·리·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,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에는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 만일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·시·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.

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(년 월 일) 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 소 (주민등록지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세 대 주 명	
거 소 (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
성 명		생년월일	
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신청(전국동시지방선거 제외)			신청 ☐

본인은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_____ (인)

_____ 구·시·군의 장 귀하

- 주: 1. 이 서식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.
2.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.
3. "거소"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병원·요양소에 머무는 사람은 그 기관·시설명을,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(세입자는 "○○○댁"까지) 자세히 적어야 하며, "전화번호"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4.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.
5. 대통령선거, 국회의원선거, 재·보궐선거에서 시각장애로 인해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경우 "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신청"란에 "√"표합니다. 거소투표신고자에게 제공되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정당·후보자의 기호만 점자로 인쇄됩니다.
6.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.
7.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